

<p>※ 위원장은 의장에게 자료요구</p> <p>8. 감사요령</p> <p>가. 감사방법</p> <p>(1)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자료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p> <p>(2)특히, 필요할 때에는 문서확인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다.</p> <p>나. 감사자료 제출요구</p> <p>(1)각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5월 3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p> <p>(2)위원장은 요구자료를 수합한 요구자료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구한다.</p> <p>(3)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 배부한 서식을 이용한다.</p> <p>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p> <p>(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p> <p>(2)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p> <p>라. 감사진행순서</p> <p>(1)감사실시 선포(위원장)</p> <p>(2)위원장 인사</p> <p>(3)집행기관 인사</p> <p>(4)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p> <p>(5)업무현황보고 청취</p> <p>(6)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p> <p>(7)감사결과 강평(위원장 인사)</p> <p>(8)감사종료 선언</p> <p>마. 유의사항</p> <p>(1)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p> <p>(2)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li> <li>○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li> </ul> <p>(3)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시행령 제17조의 7)</p> <p>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p>	<p>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p> <p>(4)감사상의 주의 의무(시행령 제17조의8)</p> <p>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금지.</p> <p>(5)감사공개원칙(동법시행령 제17조의9)</p> <p>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6)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요구</p> <p>-3일 전에 통보(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p> <p>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p> <p>가. 방 침</p> <p>(1)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p> <p>(2)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한다.</p> <p>나. 작성방법</p> <p>(1)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전문위원)</p> <p>(2)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p> <p>(3)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p> <p>(4)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의결 및 채택(운영위원회로 이송)</p> <p>(5)본회의 의결</p> <p>-----</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u></p> <p><input type="checkbox"/>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안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조례안은 2000.2.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li> <li>○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99.8.31, 시행 2000.3.2)에 따라 조례</li> </ul>
--	---

에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중인 시민감사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동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시민감사관의 지위 및 자격,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제4장 주민감사청구사항 처리, 제5장 시민감사관의 감사, 제6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7장 시민감사관의 직무협조·지원 등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례안 제4조(구성 및 자격) 제2항중 시민감사관의 임명연령을 65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1항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며, 65세가 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4세에 임명된 시민감사관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의 임명연령은 63세미만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둘째, 제9조(주민감사청구) 제2항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는 주민감사청구는 20세이상의 주민 2,000인이상의 연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의 제1항중 감사청구시 주민연서 인원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7,479,000명으로서 이의 1/50은 149,580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연서자 수는 149,580명을 상한으로 하여 1명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 셋째, 제7조(직무 및 권한) 제1항의 시민감사관의 권한중 제4호 “시의 실·국장, 자

치구청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감사기능과 본청의 감사관의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 넷째, 제10조(감사청구심의회) 제2항중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고무적인 규정이라 사료되며, 국민의 정부에서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각종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 끝으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처음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인만큼 타이트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도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중 “65세 미만이고”를 “63세 미만이고”로 한다.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